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34

2011.12.30.제정

2012.08.07.개정

2013.05.22.개정

2013.06.26.개정

2014.02.14.개정

2019.07.16.개정

2010.10.10.11

2019.12.10.개정

2020.02.12.개정

2020.04.29.개정

2020.09.24.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대한 단계적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전임교원신규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0.02.12.>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규정 제2조의 전임 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06.26., 2019.07.16., 2020.02.12.>
- 제3조(임용방법) 교원의 신규임용 방법은 특별한 경우(재외 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 공교수 등 특별초빙)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0.02.12.>
- 제4조(채용공고)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0.02.12.>
 - ② 채용공고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임용조건을 명시하되, 심사기준 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공고한다.
- 제5조(심사결과 공개)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 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 다.
 - ② 공개할 경우에는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공개내용에는 심사단계별 심사점수, 가부 판정, 등급, 심사위원별 채점점수를 공개한다.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34

제6조(심사절차) 신규임용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12.>

- ① 기초 · 전공 심사
- ② 기타 심사(실기테스트, 강의심사 등)
- ③ 교원채용심의
- ④ 면접 심사
- ⑤ 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의

제7조(심사평점) 심사평점은 기초·전공심사 80점, 공개강의 및 실기테스트 등 20점, 면접심사 60점으로 한다. 단, 공개강의 평가 및 실기테스트 등 심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공개강의 및 실기테스트는 제외한다.<개정 2013.06.26.>

제8조(심사내용 및 방법) 신규임용의 심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12.>

- ① 기초 및 전공심사
 - 1. 심사의뢰

총장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기초 · 전공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 가. 지원자 명단
- 나. 이력서
- 다.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라.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 마. 기타
- 2. 기초·전공심사위원 위촉
 - 가. 기초·전공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다.
 - 1) 내부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 3명 이내
 - 2) 외부 심사위원은 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타대학) 교원 또는 산업체 관련전문가 2명 이내 <개정 2020.02.12.>
 - 3) 심사위원 중 1/3 이상은 반드시 본교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하며 본 법인 산하 대학 교직원은 외부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전공 소속 교원이 1명일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16.>
- 3. 심사내용

지원자의 전공분야가 교수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전공분야와 일치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영역을 심사하되,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과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별표1]과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26.>

- 가. 교수자격
- 나. 지원자격
- 다. 전공 일치여부
- 라. 연구실적의 양과 질
- 마.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산업체 경력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34

- 바. 자격 및 면허 소지여부
- 사. 학과(전공)에 대한 기여 및 발전가능성
- 아.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여부

4. 심사방법 및 기준

- 가. 기초·전공심사는 [별표 1] 일반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강의중점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과 [별표 2]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 및 [별표 3]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단, 총장은 초빙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1] 내지 [별표 3]의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빙분야 채용공고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7., 2013.06.26., 2019.07.16.>
- 나. 기초·전공심사위원 각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통해 지원자 개개인별로 각 채용조건에 맞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및 [별지 13호, 14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기록하여 인비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6., 2020.02.12.>
- 다. 기초·전공심사에 필요할 경우 지원자를 불러 구술시험을 실시하거나 시범(공개)강의 [별지 제4호 서식]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6.26.>.
- 라. [별표 1] 내지 [별표 3]의 심사기준에서 기초심사 4개 항목을 모두 "가"로 판정 받은 지원자에 한하여 전공심사를 실시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부"로 판정 받은 지원자는 전공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심사에서 제외시킨다.<개정 2012.08.17., 2013.06.26.>

② 교원채용 심의

1. 교원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본교 총장과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3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02.12.>

- 2. 심의내용 및 방법
 - 가. 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기초·전공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었는 가를 제출한 심사조서를 통해 심의한다.
 - 나. 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기초·전공심사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기테스트, 강의심사 등의 평가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전공심사위원은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한다.
 - 다. 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채용예정학과(계열) 교원의 전공분포, 출신대학교 분포, 연령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초·전공심사 성적이 평균 35점 이상인 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2~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 단, 지원 상황에 따라 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접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라. 기초·전공심사 성적이 평균 3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교원채용심의위원의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면접 심사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34

1. 면접심사위원 구성

면접심사위원회는 본교 총장, 부총장, 대학 본부 행정부서 처장, 채용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호 개정 2020.02.12., 2020.09.24.>

2. 심사내용 및 방법

- 가. 면접심사위원은 지원자에 대한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별표 4] 및 [별표 5] 의 면접심사기준에 맞추어 심사한다.<개정 2012.08.17., 2013.06.26., 2020.02.12.>
- 나. 면접심사위원은 개개인별로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조서 에 기록하여 인비로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7., 2013.06.26.>
- 다.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라. 외국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면접 일의 면접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지원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물어 면접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마.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규임용을 하지 않는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의
 - 1. 심의내용 및 방법

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의는 지원자에 대한 면접심사의 결과를 심의하여 면접심사 최고 득점자를 최종임용 예정자로 총장에게 추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접 점수가 평균 48점(백분율 환산 평균 80점) 미만일 경우 임용예정자 추천을 하지 않는다.<개정 2013.06.26.>

제9조(계약기간 등) ①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 ② 신임교원이 재임용을 원할 경우 「교원 재임용 규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한다.
- ③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점이 800점 이상인 경우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며, 800점 미만인 경우는 재임용 심사가 탈락되어 해당 신임 교원은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당연 사직한다. 단,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에서 어느 하나라도 감점을 받는다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탈락된 신임 교원도 학교중장기발전계획이나 대학의 사업수행 등에 의한 필요가 있는 경우, 총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
- ⑤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신임 교원은 교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0.0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3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0년도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 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7/34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제출서류
- 1. 교원임용지원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2. 자기소개서 [별지 제8호 서식] 1부.
- 3. 학과/계열 발전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 4. 연구실적물목록 [별지 제10호 서식] 1부 및 개별 연구실적 증빙 서류.
- 5. 교육경력사항 집계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및 개별 연구실적물.
- 6. 산업체경력사항 집계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및 개별 경력 증명서.
- 7. 학위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8.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개발 실적 목록 1부 및 개별 실적.
- 9. 교수초빙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100%

※ 참고 사항

- 1. 개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경력사항 중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 시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2. 경력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시 증명서가 없는 경력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3. 외국어로 된 모든 증영서는 한글 번역 후 공증필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4.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용보험, 의료보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63개)]

<A 농업 및 임업>

01 농업 /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11 금속 광업 / 12 비금속 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D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 16 담배 제조업 / 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8/34

-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27 제1차 금속산업
-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 46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61 수상 운송업 / 62 항공 운송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 66 보험 및 연금업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9/34

<O 교육 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 93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0/34

[별표 1] 일반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강의중점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표 개정 2013.06.26., 2014.02.14., 제목 개정 2019.07.16.>

1. 기초 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 가	비고	
	연구실적물	가, 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본교	
교원자격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연수		가, 부	교원인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지원자격	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산업체경력 및 기타)	가, 부		
전공분야 일치여부	교수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전공분야 및 학과와의 전공일치 여부 및 연계성	가, 부		

2. 전공 심사 <표 개정 2012.08.17., 2020.04.29.>

심사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척도
학위논문의 일치여부(10)	학위논문의 전공 일치여부(10)	박사학위 논문: 상 5점, 중 3점, 하 1점석사학위 논문: 상 5점, 중 3점, 하 1점
	양적평가(10)	- 전공과 관련된 실적물만 인정하되 50%당 2점
연구실적물 평가(20)	질적평가(10)	- 전공과 관련된 실적물만 인정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 1편당 3점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경력(20)	산업체 및 연구 경력(10)	- 경력 1년당 2점
	교육경력(10)	- 교육경력 1년당 2점
학과(전공) 기여 및 발전 가능성(25)	학과(전공)에 대한 기여 및 발전 가능성(25)	- 매우 우수 : 25점, 우수 : 20점, 보통: 15점, 미흡 : 10점, 매우 미흡 : 5점
자격 및 면허 소지여부(가산점)	자격 및 면허 소지여부 (5)	- 학과와 관련된 주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고위공직자(4급 이상)
기타심사(20)	실기/구술능력평가	- 공개강의 및 실기테스트 등 심사결과 환산

- * 초빙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1/34

[별표 2]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표 개정 2013.06.26., 2014.02.14.>

1. 기초 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 가	비고
그이기거	연구실적물	가, 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본교
교원자격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연수	가, 부	교원인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지원자격	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산업체경력 및 기타)	가, 부	
전공분야 일치여부	교수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전공분야 및 학과와의 전공일치 여부 및 연계성	가, 부	

2. 전공 심사 <표 개정 2012.08.17., 2020.04.29.>

		,
심사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척도
학위논문의 일치여부(10)	학위논문의 전공 일치여부(10)	박사학위 논문: 상 5점, 중 3점, 하 1점석사학위 논문: 상 5점, 중 3점, 하 1점
	양적평가(5)	- 전공과 관련된 실적물만 인정하되 50%당 2점
연구실적물 평가(10)	질적평가(5)	- 전공과 관련된 실적물만 인정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 1편당 3점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경력(30)	산업체 및 연구 경력(20)	- 경력 1년당 2점
	교육경력(10)	- 교육경력 1년당 2점
학과(전공) 기여 및 발전 가능성(25)	학과(전공)에 대한 기여 및 발전 가능성(25)	- 매우 우수 : 25점, 우수 : 20점, 보통: 15점, 미흡 : 10점, 매우 미흡 : 5점
자격 및 면허 소지여부(가산점)	자격 및 면허 소지여부 (5)	- 학과와 관련된 주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고위공직자(4급 이상)
기타심사(20)	실기/구술능력평가	- 공개강의 및 실기테스트 등 심사결과 환산

- * 초빙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2/34

[별표 3]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기준 <제목 개정 2019.07.16.>

1. 기초 심사 <표 신설 2013.06.26.>,<표 개정 2014.02.14.>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 가	비고
교원자격	학력,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연수	가, 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지원자격	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가, 부	

2. 전공 심사 <표 신설 2013.06.26.>,<표 개정 2014.02.14.>

심사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척도
	박사 학위	- 박사학위 취득 30점, 박사학위 수료 28점
학 력(30)	석사 학위	- 석사학위 취득 26점, 석사학위 수료 24점
	학사 학위	- 학사학위 취득 22점
교육경력(10)	대학(교)이상의 강의경력(10)	 경력 1년당 2점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최고 10점까지 인정
학과(전공) 기여 및 발전 가능성(40)	학과(전공)에 대한 기여 및 발전 가능성(40)	- 매우 우수 : 40점-31점, 우수 : 30점-21점, 보통: 20점-11점, 미흡 : 10점-0점

- * 초빙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3/34

[별표 4] 일반교원, 강의전담교원,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기준 <표 번호 개정 2013.06.26., 제목 개정 2019.07.16.>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심사 점수	비고
	1.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10점		
	2. 전공적합성	10점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	3.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10점		
(60)	4. 학과(계열)에 대한 발전계획	10점		
	5. 대학에 대한 발전계획	10점		
	6. 산학협력, 취업지도, 학생모집 계획	10점		

[별표 5]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기준 <표 신설 2013.06.26., 표 개정 2014.02.14., 제목 개정 2019.07.16.>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심사 점수	비고
교수로서의	1.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10점		
자질과 능력	2.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10점		
(60)	3. 학교 / 학과(계열)에 대한 발전계획	40점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4/34

[별표 6] 재임용심사기준표(신규임용자)<신설 2020.02.12.>

구분	평정항목	평정내용(방법)	평정기준	점수
<u>번호</u>		• 학습지침서 • 전공실무저서(초판)	·1편당	10 (학기당) 30
연구실적 1 (합산하여 최대50점)		• 대학논문집 • 국내외 저명학술지 등재 논문 이상 • 국제/국내공모전 입상, 국내외 개인전,	• 평가기간 내 등재(발간)된 경우 인정 • 연구인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2인 (50%), 3인(33%), 4인이상(25%)로 계산	30 50 30
		외부기관 초대전 •최신교수법 활용수업(구글클래스룸 등) •외부 프로젝트 및 사업 참여	•1과목당 •기획위원회에서 평가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기준 준용)	5 최대50
	논계(50)		(교구합적정/기 정의 기단 단풍)	
2	강의평가 (200)	•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 95점 초과 • 90점 초과 95점 이하 • 85점 초과 90점 이하 • 80점 초과 85점 이하 • 75점 초과 80점 이하 • 75점 이하	200 160 120 80 40
, ,	 :계(200)		- 13/2 3 of	U
1	11 (200)	• 신입생 충원율	• 학과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3점	300
3	입시활동 (350)	• 입시홍보활동	•고교방문(차수별2점,부산2점,부산외4점) •입시설명회 유치(회당 5점) •입시설명회 참석(회당 2점,부산2점,부산외4점) •고교 진로체험 유치(회당5점, 대학방문 50명이상 진로체험만 해당) •고교 진로 특강(회당 5점, 고교 및 대학 전로특강자 인정)	- 50
			• 95% 초과	100
			• 95–91%	90
	학생관리	• 정원내 재학생충원률(학기당 100점)	• 91-88%	80
4	(300)	(4.1., 10.1. 기준 / 임용 후 첫 학기 제외)	• 88-84% • 84-80%	70 60
			• 80-70%	50
			• 70%미만	0
5	취업활동 (100)	•취업노력 실적(학기당 25점)	•동행면접 인원수×5점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취업상담실적 업로드 수(학기당)×1.5점	25
	·계(750)			
합	계(1,000)			2 (2)
	교육관계	•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여/부
	법령의		•성희롱 기타 물의	여/부
6 교원으로 품위 유 관한 / (해당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 진정(사실로 인정될 경우)	여/부
	품위 유지에	■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여부	• 투서(사실로 인정될 경우)	여/부
	관한 사항 (해당 시, 재임용 제외)		• 민사소송 피소 물의	여/부
			•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물의	여/부
			• 학칙 및 규정위반(사유서 제출)	여/부
	교원징계 및 면학분위기 훼손에 교원징계 및 면학분위기 훼손 처분 조치		• 정직(중징계) • 감봉(경징계)	-200 -150
7		- 삼중(경정계) - 견책(경징계)	-100	
		■ 교원성계 및 면약군위기 웨곤 서운 소시	• 경고(회당)	-50
	관한 사항		• 수업결손 1주일 이상	-100

20 . . .

교원인사위원장 :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5/34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교원 및 강의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신규임용 전공 심사조서<표 개정 2013.6.26., 2014.2.14., 제목 개정 2019.07.16., 2020.02.12.>

성 명								생	년월일)	1	9					(r	<u>마</u>	세)
지원학과(계열								ス	1 원	분	야										
현 직 업	직		명											위							
		문힉	사						학사				전		대학	/ 수	-료 /	학위	취득	중	택일
출신대학		-사						학사					전		대학		-료 /		취득		택일
		사						<u></u>					전		대학		-료 /		취득		택일
	,		과정	->>			į	박사				43	전	공 🤊	대학	/ 수	-료 /	학위	취득	중	택일
			1원 :	경력	1)	>		ų	1		개위	월									
교육경력 (대학(교) 이건	(1) (사)	[임, '사 :		(본인	및 시]기재)	간		Ļ	đ		개 -	월	(경력	중 중	부모	는	· 기긴)은	제외	함)	
	경 간		<u> 환</u>		력 ②	시		Ļ	<u> </u>		개 -					되는	를 기		· ·	함)	
국가,공공단체,	면본	-인기	제 7	경력.	경력증	명사	有		년		ブ	H 윝	! 경력	부증명	서 4	無			년		개월
구기관,시설 산업체 근무경	^및 력 환	산경] 력(3)	경력증	명시	计有		년		フ	H윝] 경력	벽증명	서 4	無		-	년		개월
					학(교) 만, 시설	이 건] 및	상의 ! 사약	교육	구경력 근무)) ق	①+② 라사기	2)) 경구	+ (3))					년		개월
1719	0 0	2.1] 워지		<u>フ</u> フ] フ			<u> </u>	1	- 1-	0 -	1 (0	<u>/</u> 편						%	
연구 실적	합계		본교	1 교	원인사	규ス		의기	4					편						%	
논문	(환산	실적)			,	저서(환신	난실적	l)			proce	edin	g(환	산석	실적)	특	허(횐	-산 :	실적)
국내외저명학술지		편		%	5 국제2	선문학	학술시	1	3	권		%	국제								
국제전문학술지		편		%	5 국내?	선문	학술시	1	3	권		%	학술		편		%	특하	1	건	%
국내전문학술지		편		%	5 번역/	4			3	권		%	회의								
대학논문집		편		%	5 대학 ₃	고재			3	권		%									
기타논문집		편		%	5 학술3	고양	서적		-	권		%	전국		>			실용	-		
박사학위논문		편		%	ó								학술 회의		편		%	신인		건	%
석사학위논문		편		%	<u> </u>								되-								
환산경력산출은 본	교교	원인시	가구정	[별표]	1]연구실	적 위	인정기	준당	및 인정	률	라 [별	丑2	2] 교육	- 및 연	- 1구경	력:	환산표	에 의	하여	환신	함
1. 기초심사 항목	평가	결과	가, 부	- 여부	중 부(2	§) 3	포시 수	유무	없음	음()	있	음()	(항목	: ;)
	학위논	드문의	전공	·일치	여부			/	10	교	육경	력								/	10
2. 전공심사	연구실	실적물	의 양	:적평7	' }			/	10	학	과(전]공))에 대	한 기	여 및	발	전가능	등성		/	25
심 사 항 목 별	연구실	실적물	의 질	적평7	' }			/ 10 자격 및 면허 소지 여부(가산)									5				
평점	산업체	에 및	연구기	경력				/	10												
			합	계								/	80								
종합의견																					
	I.																				

20		
40		

싀	ス	누위	위

소 속 : 대학교(과) 직명: 성명: (인)

※ 상기 기초·전공 심사조서의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 교무처장 :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6/34

[별지 제2호 서식]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전공 심시조서<표 개정 2013.6.26., 2014.2.14., 2020.02.12>

성 명						.개	너워이](나이	1	1	α				(5	1}-	세)
지원학과(계열	1)					Z		<u>!(기기</u> 분 야	+	1.		•	•		(1		1117
현직업	·/ 직 장	· 명					1 2	<u> </u>		직 5	위						
	전문학	_				전문	학사			 전		· / 수j	显 /	학위	취득	중	 택일
호기미체	학사	, ,				 학사				 전				학위			
출신대학	석사	과정				 석사				<u>-</u> 전				학위			택일
	박사	과정				박사				전	공 재힉	/ 수호	显 /	학위	취득	중	택일
		교원 경		D		ų	1	개	월								
교육경력	71.71	초빙교	1원 보이	및 시간		Ļ	đ	개	월	(경력	중 중복	되는	フ] て	같은 :	제외	함)	
(대학(교) 이상	}) <mark>경사</mark> 겸임,	경력 (- 초빙)		<u>기개기</u> 및 시			_										
		나 환산				Ļ	년	개	월	(경력	역중 중부	복되는	フ]	간은	제오	함)	
국가,공공단체,	연 본인기	기재 경	력경	병력증명	서 有		년	7	개월] 경력	역증명서	無		ų	년		개월
구기관,시설 및 산업체 근무경	및 러 환산	경력③	75	병력증명	서 有	ī	년	7	개월] 경력	역증명서	無		Ļ	<u> </u>		개월
<u> </u>	구 난산 경력	합계 ((대회	·(교) 이	상의	교육	구 경력	(1)+(2))	+					٠,,		-11 A1
국가,	공공단체	∥, 연구	기관	, 시설 `	및 산	업체	근무	환산	경로	4 (3)					년		개월
43 7 13 7	-1 -11		-	본인 기							편					%	
연구 실적	압계	본교	교원 사하	인사규 연구 실	정에] <i>저 (</i>	의 7 (A))	4				편					%	
누무((환산실적		L L	<u>"" E</u>			<u>·</u> 실적)		proce	eeding(\$	<u></u> 화산싴	적)	특히	허(환	-사스]적)
국내외저명학술지	편	1	%	국제전된			7		%		ocurig (- 17	,			- 1/
국제전문학술지			%	–					%	국제	1		0.7	= -1		1	0.4
국내전문학술지	Į.		%		- 1 -	+			%	학술 회의	편		%	특허		건	%
대학논문집	Į.		%	대학교자	H			<u>니</u>	%	21-1							
기타논문집	Į		%	학술교양	·		7	<u> </u>	%	전국							
박사학위논문	Ę		%							학술	편		%	실용 신안		건	%
석사학위논문	Į.		%							회의				건인			
환산경력산출은 본	교 교원인	사규정 ['	별표1]	연구실적	인정기	[준 5	및 인정	<u>률</u> 과 [빌	王2	2] 교육	- 및 연구	경력 환	산표	에 의	하여	환산	함
1. 기초심사 항목	평가 결과	· 가, 부	여부경	중 부(否)	표시 -	유무	없음	()	있음	음()	(항목 :)	
	학위논문의	의 전공일	l치 c	겨부		/	10	교육경	력							/	10
-	연구실적						5	하고(7	12	\പി പി	한 기여	р) н}-z-	1714	=서			25
[2. 전공심사													1/ FG	0 0			
심 사 항 목 별 평점	연구실적	구실적물의 질적평가				/ 5 자격 및 면허 소지 여부(가산)								5			
-0 H	산업체 및	연구경	력			/	20										
		합계							/	80				1			
종합의견																	\dashv
0 비기신																	

20 . . .

시	ズ	L의	워
	' '	_	17

소 속 : 대학교(과) 직명: 성명: (인)

※ 상기 기초·전공 심사조서의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 교무처장 :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7/34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전공 심사조서 <표 개정 2013.06.26., 2014.02.14., 제목 개정 2019.07.16., 2020.02.12.>

	1					т —						
성 명			생님	크월	일(나이)		19			(만	세)	
지원학과(계열)			지 원 분 야									
현 직 업	직장명					직	위					
	학 사											
출신대학교	석 사		수료 / 학위취득 중 택양							j		
	박 사									수료 / 학위취득 중 택일		
강의경력	대학(교)) 이상 강의경력	상 강의경력 년 개월 (경력중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1. 기초심사 항목 평가 결과 가, 부 여부중 부(否) 표시 유무 없음() 있음() (항목 :))					
	심 사 항 목 배점(만점) 평가 점수							점수				
	학 력								30점		점	
2. 전공심사	대학(교)	이상의 강의경력					10점		점			
2. 선정검사	학과(전공	굥)에 대한 기여 !	40점		점							
합 계							80점		점			
종합의견												

20			

심사위원 소속: 과(계열) 직명: 성명: (인)

※ 상기 기초·전공 심사조서의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014. 1.)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 교무처장 :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8/34

[별지 제4호 서식]<표 번호 변경 2013.06.26.>

공개강의 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지원자 성명					채 용 분 야									
강 의 주 제	주 제														
심 사 항 목		11) Z		평 가 기	평 가	wl =									
		배 점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점 수	비고							
1. 강의준비도	Ē	20점	20~18	17~15	14~12	11이하									
2. 강의방법 및 태도		20점	20~18	17~15	14~12	11이하									
3. 의사표현 ⁹ 정확성 및		30점	30~27	26~24	23~21	20이하									
4. 강의능력		30점	30~27	26~24	23~21	20이하									
		항	계			_	/100								
심사결과 종합의견															

20 . . .

심사위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9/34

[별지 제5호 서식] 일반교원, 강의전담교원,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조서<표 번호 변경 및 개정 2013.06.26., 2014.02.14., 제목 개정 2019.07.16..>

7	성 명					생년 [.]	월일((나이)		19					-	만	세)
지원	학과(계열)					지	원 분	라야									
ট্	현 직 업	직 장 명							ス								
		전문학사]문학	사			전공	재학						택일
출신대학		학사				사				전공	재학		수료				택일
		석사 과정	_			사				전공							택일
		박사 과정	_		빈	사				전공	재학	/ =	수료	/ 학	위취득	후 중	택일
		전임교원	- '			년		개월									
	고육경력 h(교) 이상)	강사 경력	(본			년		개월] (2	경력중	중복	되는	<u>-</u> 기	간은	제요	비함)	1
		겸임, 초 간강사 ३		원 및 시 병력 ②		년		개월	<u>l</u> (경력중	- 중토	부되	는 >	기간은	은 제	외 함	·)
	공공단체,연	본인기재	경력	경력증명	서 有		년	개	월	경력증	명서	無			년		개월
구기 산업	관,시설 및 체 근무경력	환산경력		경력증명			년	개		경력증	명서	無			년		개월
				학(교) 이 관, 시설 5											년		개월
			지원기	나 본인 기	재 내-	용				편						%	6
연	l구 실적 합			원인사규 한 연구 실						편						%	6
		심	사 기	준			刊	검	IJ.]가점수	-(면접	넘심.	사 -	위원	기록)	비고
심	1. 의사표현	년의 정확/	성 및	논리성			-	10									
사	2. 전공적합성						10										
항	3.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10										
목	6. 4. 학과(계 ⁹							10									
増	5. 대학에			2/11 9				10									
평 기				n) == =1 =1	숙기											+	
점	6. 산학협력		도, 약		왹			10									
		합		<u>계</u>			(60									
	좋은점:																
면 접 소 견	미흡한 점 :																

20 . . .

면접심사 위원

소 속: 적 명: 성 명: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0/34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조서<표 신설 2013.06.26., 표 개정 2014.02.14., 제목 개정 2019.07.16..>

성 명		생년월일(나이)	19			(만 세)
지원학과(계열)		지 원 분 야				
현 직 업	직장명		직 위			
	학 사		•			
출신대학교	석 사			수로	도 / 학위취득	중 택일
	박 사			수토	도 / 학위취득	중 택일
강의경력	대학(교) 이상 강의경력	년 기	1월 (경력	중 중복되	되는 기간은	- 제외함)
	심	사 항 목			배점(만점	평가 점수
	1.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10점	점
심사항목별 평점	2.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10점	점			
[심사왕국별 평심 	3. 학교 / 학과(계열)에 디	40점	점			
	합 계				60점	점
	좋은점:					
면 건						
접 소	미흡한 점:					
견						

20			
40	•	•	٠

면접심사 위원

소 속: 적 명: 성 명: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1/34

[별지 제7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 표 개정 2014.03.01., 2019.07.16.>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임용 지원서

							ĺ	접수번호	2		
지원	분야	강의: 산업	중점교원 업체경력교	□, 전임]원□, a	님교원 □ 강의전딤	, 산학 교원[학협력], 외	중점교원 국인교원	! □ ,		
지 학과/	원 계열			•	학과/겨		·		전공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Q	명문				m× 4Cm) H월 이내 촬영
주민 번	등록 호			~			(만	세)			
주		자택									
	소	직장									
 연 릭	- 뒴	자택			직장			휴[내폰		
	·	E-mail						FAX			
ち	역	복무기간	발: .	~				기혼□, 미혼[결혼 여부 ※ 배우자의 직업			
0		군별			계급			여부	※ 배누	스사의 스	
구분	학	교 명	학 (전	과 [공)	세부	전공		기 간	추	학위 부득일	학위명
고교								~			
전문 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위 본인은 귀 대학교의 교원임용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위	내용은 .	사실과 같	앝음을	확인힡	납니다.			
				20) 년	월	일				
			7	[원자 :				(P)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2/34

[별지 제8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

|--|

지원자 :

(FI)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3/34

[별지 제9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

학과/계	열	발전계	획서

※산업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수 지원자는 학생들의 진로/취업지도 중심으로 작성

지원자:

 $(\vec{E} \vec{J} \vec{J})$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4/34

[별지 제10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

연 구 실 적 물 목 록 (논문/저서/Proceeding/연구보고서/특허 등)

연번	*구분번호	논문/저서/Proceeding/연구보고서/특허 등 제목	저자수	발표기관	발표일자	학진 등재 여부
						□등재 □등재후보 □미등재
						□등재 □등재후보 □미등재
						□등재 □등재후보 □미등재

*	구분	번호는	구분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람.

■ 논문 : 1.국내·외 저명학술지 2.국제 전문학술지 3.국내 전문학술지 4.대학 논문집 5.기타 논문집 6.박사학위취득논문 7.석사학위취득논문

■ 저서: 8.국제 전문학술서 9.국내 전문학술서 10.번역서 11.대학교재 12.학술교양서적

구분 보기

■ Proceeding: 13.국제학술회의 발표 Proceeding, 14.국내학술회의 발표 Proceeding

■ 연구보고서 : 15.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보고서 / ■ 특허 : 16.특허 17.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율 적용 :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1] 적용

※ 위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초빙분야 :

지원자: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5/34

[별지 제11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표 개정 2014.02.14.〉

교육경력사항집계표

연번	재직기간	강의 대학교	주당 강의 시수	근무년월4	수	구분		경력증명서
	~		시간/주	년	월	□전임 □겸임 및 초	빙 □시간강사	□유 □무
	~		시간/주	년	월	□전임 □겸임 및 초	빙 □시간강사	□유 □무
	~		시간/주	년	월	□전임 □겸임 및 초	빙 □시간강사	□유 □무
	~		시간/주	년	월	□전임 □겸임 및 초	빙 □시간강사	□유 □무
	~		시간/주	년	월	□전임 □겸임 및 초	빙 □시간강사	□유 □무

- * 교육경력사항 기재목록에 작성된 경력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시수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며 같은 기간 내 시수가 가장 많은 교육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산업체 경력과 중복시 제외됨.
- ※ 교육 및 산업체연구경력은 지원자 본인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의 환산 인정률을 적용함
- ※ 시간강사의 경력 환산시 [별표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의 환산 인정률 7번을 적용.

※	위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	--------

20 . . .

초빙분야 :

지원자: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6/34

[별지 제12호 서식] <표 신설 2013.06.26.>,<표 개정 2014.02.14.>

산 업 체 경 력 사 항 집 계 표

연번	기관명	재직기간	근무년월수	담당업무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납부증명	경력증명서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년 월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유 □무	□유 □무

^{*} 고용보험 납부증명 必. 경력증명서 必.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상시근로자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교육 및 산업체연구경력은 지원자 본인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의 환산 인정률을 적용함 ※ 위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초빙분야 :

지원자:

^{*}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며 교육경력과 중복시 제외되며 □ 항목에 반드시 ∨ 기재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함.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7/34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교원 및 강의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 기초 심사조서 <표 신설2020.02.12.>

성 명			생년월일(나이)		19				(만	세)
					19	•	•	•	(단	<u> </u>
지원학과(계열)			지 원 분 야							
현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문학사	전	문학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귀취득 중	등 택일
출신대학	학사	ই	-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귀취득 중	등 택일
2011	석사 과정	석	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귀취득 중	등 택일
	박사 과정	박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귀취득 중	등 택일
	교원자격	연구실적물					フ	ŀ, 부		
	业也不行	연구경력 및 3	교육경력 연수				フ	ŀ, 부		
기초 심사	지원자격	채용공고에 제	시한 지원자격				フ	ŀ, 부		
		교수채용 공고문에 및 학과와의 전공일				·, 부				
종합의견										

0 8 7 6						
		20				
심사위원						
소 속:	대학교(과)	직명:	성명:	(인)	
		_, , _,				
※ 상기 기초 심	사조서의 심사결과를	확인합	-니다 (20)		
Н д	사겨사대하고 교원이지	1 이 이 지	- 교무원자 :		(0))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8/34

[별지 제 14호 서식]외국인교원 신규임용 기초 심사조서 <표 신설 2020.02.12.>

성 명			생년월일(나이)	19			(만	세)
지원학과(계열)			지 원 분 야					
현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비취득 중	등 택일
출신대학	학사	Ž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위취득 중	두 택일
	석사 과정	소	크 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위취득 중	등 택일
	박사 과정	박사		전공	재학	/ 수료 / 학위	비취득 중	등 택일
기초 심사	교원자격	학력,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연수 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가, 부		
기소 검사	지원자격					가, 부		
종합의견								

20			
20	•	•	

심사	위원
----	----

소 속 : 대학교(과) 직명: 성명: (인)

※ 상기 기초 심사조서의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위원장 교무처장: (인)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9/34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1]

구 분	인 정 기 준	인정률(%)	비고
	국내·외 저명학술지 ⁽¹⁾	200	
	국제 전문학술지 ⁽²⁾	150	
	국내 전문학술지 ⁽³⁾	100	
논문 ¹⁾	대학 논문집	100	
	기타 논문집 ⁽⁴⁾	50	
	박사학위취득논문	200	
	석사학위취득논문	100	
	국제 전문학술서 ⁽⁵⁾	200	
	국내 전문학술서 ⁽⁶⁾	150	
저서 ²⁾	번역서 ⁽⁷⁾	100	국내에서 출판된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 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
	대학교재 ⁽⁸⁾	100	본 대학 교원으로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대학교 재를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
	학술교양서적 ⁽⁹⁾	50	
2)	국제학술회의 발표 ⁽¹⁰⁾	50	
Proceeding 3)	전국학술회의 발표 ⁽¹¹⁾	30	
연구보고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보고서	50	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보고서인 경우
= -> 4)	특허	10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특허 ⁴⁾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50	50% 가산
체기귀서	현장프로그램 참여	100	· 1개월 이상 1건
현장참여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100	1/개월 이경 1선
창업실적	실험실공장 창업실적	100	
상위자격 취득	기술사 이상 (1건)	100	
연수	교육부·학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공인된 연수	100	소정의 시간(120시간 이상 실무내용 비율이 60% 이상)
	산업체 현장연수	100	소정의 기간(6개월 이상)
산업체현장 연수 및 파견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100	6 ~ 12개월 이내
리	파견근무	50	3 ~ 6개월 이내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0/34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

구 분	인 정 기 준		인정률(%)	비고
		특선 이상	200	
	공인된 국제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	입선 이상	150	
	자인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100	
		특선 이상	150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모전	입선 이상	100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50	
	개인전		10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
	2인 공동전	50	산	
예ㆍ체능계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30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 문화재단 등에 의한 기획초대전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연구실적	전문 화랑규모의 기획초대전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 산	
	공인된 단체전 출품(심사위원)	30	·문예진흥원, 미협 등에 등록 된 단체의 단체전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일반 단체전 출품(심사위원)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 산	
	공인된 체육단체의 개인연구 발표회	100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출전	100		
	국제공인 경기 입상	100		
	전국규모 국내경기 입상	100		
	체육관계 훈장	100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100	50시간 이상	
	국제공인 심판자격		100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1/34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1]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 설명]

- 1. 공동연구실적물은 다음의 환산율에 따라 인정한다.
 - 1) 1인 연구: 100%
 - 2) 2인 공동 연구: 50%
 - 3) 3인 이상 공동 연구: 30%
- 2. Proceeding으로 평가받은 후 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논문 적용기준에서 Proceeding 적용기준을 차감하다.
- 3.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 (1) 국내·외 저명학술지

국내·외의 저명학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논문 게재당시에 SCI (Science Citation Index),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2) 국제 전문학술지
 - ① 국내 SCI(IF 1.0 이하) 또는 확장 SCI, sc SSCI에 등재된 학술지
 - ② 논문 게재 당시에 SCI, SSCI 또는 AHCI 중 어느 색인에도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로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의 전문학술단체에서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및 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간행된 학술논문지
- (3) 국내 전문학술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전국규모 이상으로 평가받거나 등재후보 이상으로 평가된 학술 지 단,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작업이 1차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학술지 간행 연수가 3년 이상이며, 회원수가 인문·사회계열은 100명 이상, 자연·이공계열은 200명 이상이고, 회원이 5개 광역시 이상(타 지역 50% 이상) 분포하는 학술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 지를 한시적으로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한다.

- (4) 기타 논문집
 - (1), (2), (3)항의 학술지를 제외한 모든 논문집, 학술지 등. 단.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30%만 인정함.
- 2) 저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국내·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저술한 것을 말한다. 단, 논문 모음집은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국제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외국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 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6) 국내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국내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 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7) 번역서

외국의 전공관련 학술서를 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2/34

(8) 대학교재

대학의 강의를 위하여 출판한 전공입문서, 개론서, 원론서, 각론서를 말한다. 단, 실험실습지침서, 수험서, 문제집 등은 제외한다.

(9) 학술교양서적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공에 관련된 교양서적을 말한다.

3) Proceeding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학술회의의 논문집에 게재된 것을 말한다.

(10) 국제학술회의

국내·외의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4개국(국내 개최시 5개국) 이상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11) 전국학술회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4) 특허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결정된 것으로,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3/34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 <개정 2012.08.17., 2013.05.22., 2019.12.10., 2020.02.1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NO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인정물(%) 인정범위 100%
1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 박사과정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00%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 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 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인정범위 30%-70% (100%까지 가능)
6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개정 2013.05.22>	70%
7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주당 5시간 이하, 주당 5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 가산, 100%까지 인정)<개 정 2013.05.22>	50% - 100%
8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 우	70%
9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개정 2013.05.22>	70%
10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개정 2013.05.22>	70%
11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개정 2013.05.22>	70%
12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100%)<개정 2013.05.22>	70%



문서번호	BSKS-3-1-10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4/34

13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대학, 전문대학의 체육코치	70%
14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5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인정범위 70%-100%
16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17	< 작제 2012.8.17.>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19 20	<삭제 2019.12.10.> <삭제 2019.12.10.>	
21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2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개정 2013.05.22>	100%
23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항공법』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추가 2012.8.17.>.<개정 2013.05.22>	100%
24	『국가기술자격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 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00%
2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05.22>	100%
26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보건계열의 경우 100%까지 인정) <개정 2013.05.22>	100%
27	국가,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2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개정 2013.05.22>	100%
29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추가 2012.8.17.>.<개정 2013.05.22>	100%
30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31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개정 2013.05.22>	100%
32	민간 산업체(교육기관포함)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개정 2019.12.10., 2020.02.12.>	100%